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01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 의 자 : 전진숙 · 김선민 · 김정호
이인영 · 이정문 · 박 정
이수진 · 전용기 · 오세희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임위원회 존중에 대한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증액 심사 내역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예산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정책적 전문성을 사장시키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예산심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 상임위원회의 삭감 내역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사에

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5항 본문 중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을 “변경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새 비목의 설치에”를 “예비심사 내용의 변경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 ④ (생략)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 ⑦ (생략)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변경하는</u> ----- ----- ----- ----- ----- ----- . ----- <u>예비심사 내용의 변경에</u> ----- ----- ----- ----- ----- -----.
	⑥ · ⑦ (현행과 같음)